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 1.] [대법원규칙 제2813호, 2018. 12. 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76호, 시행 2019. 1. 1.)이 개정됨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의 관련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담당하도록 함(제32조의2 신설)

(2)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함(제39조 단서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 1.] [대법원규칙 제2809호, 2018. 12. 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1)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형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사 판결서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출력 시 사용되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보전을 위하여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출력 시에도 수수료를 내도록 함

2. 주요내용

(1)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시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제5조제1항)

(2)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제5조제2항)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35호, 2018. 12. 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는 동시에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두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며,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98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임직원에게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재판기록 열람 · 복사 규칙

[시행 2019. 1. 1.] [대법원규칙 제2810호, 2018. 12. 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서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결서 등을 열람 및 출력하는 경우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에 따라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의 수수료 부분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마다 1,000원으로 함(제4조제3항 단서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업등기규칙
[시행 2018. 12. 19.] [대법원규칙 제2812호, 2018. 12. 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1)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시행하는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업등기법」(법률 제15756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무능력자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부동산등기 열람사무와 동일하게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열람사무의 운영을 도모함

2. 주요내용

(1) “무능력자등기기록”을 “미성년자등기기록”으로, “무능력자등기”를 “미성년자등기”로,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각각 변경함(제7조, 제84조, 제89조, 별지 제2호)

(2)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용어를 변경함(제85조, 별지 제3호)

(3)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있게 함(제27조)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34호, 2018. 12. 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임직원 등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95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하여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더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

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4.] [기획재정부령 제699호, 2018. 12. 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점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등의 제한대상을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서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으로 확대하고,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을 계약금액의 0.5퍼센트 또는 1.5퍼센트에서 1.5퍼센트 또는 4.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28.] [대법원규칙 제2814호, 2018. 12. 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인명용 한자를 확대하여 한자 이름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편의성 및 성명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인명용 한자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별표 1 및 별표 2) – 감독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가 된 한자 등 137자를 현재 8,142자에 추가하여 총 8,279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7호, 2018. 11. 27., 제정]

1. 제정이유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사실의 신고 및 조사, 그

결과에 따른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및 인사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및 조사(제3조 및 제4조)

(1)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음.

(2) 임용권자 등은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되, 피해자 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제5조)

(1) 임용권자 등은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파견근무,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임용권자 등은 신고자가 그 신고를 이유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파견근무,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제6조)

임용권자 등은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에게 직위해제, 징계 의결 요구,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의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제7조)

임용권자 등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에게 징계처분,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성과평가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마.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및 감사(제8조)

(1)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 등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고충에 대한 상담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2)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인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 등이 부담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295호, 2018. 11. 2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97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임직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281호, 2018. 11. 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대학이나 기관을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추가하여 국민의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이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학점인정 신청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